

제 4장 소방(消防)

제 1절 소방제도의 변천

소방제도는 “불장난하면 자다 오줌 싼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시작되어 조선시대 무비사(1392년), 금화도감(1426년), 수성금화도감(1426년), 수성금화사(1481년)를 거치면서 화재, 수재, 성(城)과 성벽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885년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근대적인 형태의 소방제도가 시작되었다. 소방서 설립 초기에는 화재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의 임무가 주였다면 현재에는 변화되는 재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생활안전, 화학사고 등 그 담당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 삼국시대~해방(고대~1945년)

소방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간 잦은 전란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도성이나 읍성에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러한 성(城)은 대개 구릉지에 축조되었고, 도성의 건축술이 발달되어 왕궁, 관청, 도성 등 대형건축물이 축조되고 일반인들의 민가는 서로 인접하여 짓게 되어 화재발생시 연소가 용이하여 대형화재로 발전,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분야로 분화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신라시대 미추왕(이사금) 원년(서기 262년), 금성 서문에 화재발생 민가 1백 여채 연소하였다는 기록과서기 596년 영흥사(신라 진평왕 18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문, 구제하였다.’는 기록 등을 통해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에서 구휼 대책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도성에서는 대개 군사들과 성민들이 합세하여 불을 진화하였고 지방에서는 부족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부락 단위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평화의 시기로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증가가 가속화되었으며 도성 내에는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번창하고 시가지의 민가가 밀집함에 따라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방화의식도 싹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의하면 헌강왕 6년(서기 880년) 9월에 왕이 좌우 군신과 월상루에 올라서 사방을 관망하였는데 가옥이 즐지어 늘어섰고 가악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왕이 가신에게 말하기를 “내 듣건데 작금

에 백성이 집을 기와로 덮고 밥을 짓는데 솥을 쓰는데 사실이 그런가”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추측하건대 사회가 안정되고 경주가 번창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화재예방 측면에서 불 때 민가의 지붕을 초옥(竝)으로 하지 않고 기와로 하였고 나무를 때지 않고 솥을 써서 밥을 지었다 함은 백성들의 화재에 대한 방화(防火)의식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국가차원에서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정부 조직처럼 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은 없었으나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를 단속하고 예방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되고 대형 건물이 들어선 데다가 병란이 잦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 더욱이 도읍지였던 개경은 지역이 협소하여 건물들이 밀집하였고, 민가의 경우 초옥이 대부분 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민가 및 상가로 확대되어 수 백동씩 연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 시대에서는 왜구의 방화 약탈이 심하여 각 궁전과 창고의 대형화재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문종 20년 운여창(양곡창고) 화재 이후로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火氣)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금화관리자(禁火管理)를 창고에 배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범인이 관리인 경우에는 현행 면직처분에 해당하는 현임삭탈을 하였고, 일반인이 실수로 관청을 소실하였을 때는 태 50, 민가 및 재물을 불에 태운 경우에는 장 80의 형이 주어졌으며, 일반인이 관청, 사당 및 민가의 재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자는 건물의 크기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징역 3년형을 주었다. 또한 민가나 양곡, 피륙을 저장한 곳에 불을 지른 자는 주범은 사형, 중범은 곤장 20대의 형벌을 가하였다.

우리나라에 소방조직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조선시대로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수공업의 급속한 성장 및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인 한성부를 비롯한 평양부, 함흥부 등 상업 도시들이 발달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되었으며, 병란 및 민란 등으로 궁궐화재도 극심하였다. 이러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선 초에 한양을 건설한 뒤 성내(城內)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가옥과 가옥 사이에 방화장(防火牆)을 쌓고, 요소(要所)마다 우물을 파고 방화기기(防火器機)를 설치하였으며, 세종 5년에 병조(兵曹)에서 궁중화재에 대비하여 금화조건(禁火條件)²⁾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공조(工曹)에서는 구회사다리, 저수기, 급수기를 비치하고, 형조(刑曹)에서는 급수하는 일을 맡았었다고 한다.

1426년(세종 8년) 2월에 화적(火賊)의 방화로 큰불이 일어나자, 소방 고유조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금화도감(禁火都監)”³⁾을 한성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

1) 금화관리자(禁火管理者) : 각 관아(官衙)와 진(鎭)은 당직자 또는 그 장(長)을 금화책임자로 지정

2) 금화조건 : 조선 시대 한성(漢城)의 부내(府內)나 각 궁궐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평소 미리 대비하여 관리들이나 군대, 백성들의 진화(鎭火)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 것.

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 등의 방화업무(防火業務)를 담당하는 관원⁴⁾을 배치하고 관아, 민가를 구화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5가 작통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용조직(현재의 의용소방대와 흡사)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앞서 1422년 2월에 설치된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함께 금화도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짐에 따라 이해 6월에 두 도감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고, 수성·금화업무 외에 천거·도로·교량수축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그 뒤에도 수성금화도감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1460년(세조 6년) 5월에 중앙 각 관서의 대폭적인 인원감축 및 불요불급한 기구축소 때 도감을 폐지하여 수성의 업무는 공조(工曹)로, 금화의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하였다. 그러다가 1481년(성종 12년) 3월에 그동안 소방업무의 해이(解弛)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도독 질을 위한 방화가 많아지자, 금화도감을 다시 부활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앞서 폐지하였던 수성금화도감이 부활하였고 더 나아가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되어 『경국대전』⁵⁾에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고종황제 이후에는 소방사무를 포도청에서 일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갑오개혁(1894년) 이후 일본은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사무를 합쳐 경무청을 설치하면서 경찰과 소방은 내무 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경무청 처무세칙을 보면 소방업무를 “수화(水火), 소방(消防)은 난파선 및 출화(出火), 홍수(洪水) 등에 관계하는 구호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소방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호의 개방으로 완용펌프, 상수도 소화전 등 소방장비의 설치와 소방훈련, 화재보험제도 등 외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경무청(警務廳)은 폐지되고, 소방업무를 조선총독부 경무국 방호과나 보안과, 경비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10년대에는 서울시내 경찰관서에 소방관을 배치하고 그 외의 주요도시에도 소방조(消防組)⁶⁾를 편성해 상비 소방관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적인 소방력을 활용하여 화재예방활동과 진압활동을 하는 소방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진압장비(가솔린펌프)와 소방용 장비⁷⁾(파괴장구, 구조

3) 금화군(禁火軍) : 전 관원 및 방민 총동원체제, 자기 분담구역에 출동하여 소화, 소집 및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화 작업의 비전문가로 현장 취약점

멸화군(滅火軍) : 1543년(중종 38년) 금화군의 취약점 보완을 위해 설치, 유급 상설소방대원 50명, 수성금화사 24시간 대기, 화재진압의 선봉대로 조선시대의 “소방관”

4) 제조(提調) 7인, 사(使) 5인, 부사(副使)·판관(判官) 각각 6인

5) 경국대전에 소방관련 법령내용은 행순(순찰), 방화관계법령, 실화 및 방화에 관한 형률이 기록됨.

6) 1915년 6월 23일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인 소방조규칙(조선총독부령 제65호) 제정 이전에는 일본인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운영되었던 조직으로 1515년 12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소방조 직규칙시행세칙 제정을 시작으로 황해도가 1931년에 마지막으로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조직됨.

7) 파괴장구 : 파괴소방차, 갈고리, 도끼 등 구조장구 : 구조대, 구조막

장구, 화재진압, 예방장비)가 도입되었고, 소방장비의 사열 등을 실시하는 시무식 행사(정월 4일)⁸⁾,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일(防火日, 매년 12월 1일) 행사, 매년 2회 이상 소방조원을 소집하여 점검과 연습을 행하고 기구의 정비 상황과 기율을 감독하는 춘·추 연습 등의 소방행사 및 연습이 실시되었다.

1922년에는 경성소방조상비대가 관설 소방조직인 경성소방소⁹⁾로 개편되어 소방수의 신분이 정식 공무원으로 양성화되었고 1939년에는 기존의 소방조와 수방단이 경방단으로 통합되어 전국의 소방조의 수는 1910년에 68개에서 1938년까지 1,398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방조직의 변화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정책의 하나로서 일본인 밀집거주지 중심으로 소방대를 편성하여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우리민족은 다만 피동적인 활동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소방의 근대화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 과도기(미군정시대, 1946년~1948년)

조선총독부를 인수한 미 군정청은 조선정무국을 부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미군통치기구(당시 10부 7처)를 확정하였는데 이때 소방은 1946년 4월 10일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고 상무국 토목국이 동년 8월10일 토목부로 승격되면서 중앙소방위원회를 관장하였다. 이후 소방부 및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가 설치되고 1947년에 소방청이 설치되어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 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경찰행정체제에 속하게 된다.

1947년 설치된 “소방청”은 청장 1인과 서기장 1인을 두고 군정고문 1인을 배치하였으며 부속기구로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었다.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위원회에 기술보조원 및 직원을 두었다.

사실 이 시기의 소방서 기구는 어떠한지 확실치 않으나, 서울의 소방서 직원이 600여명에 이르고 일제말기까지 5개소(북한지역 3개소 제외)에 불과했던 소방서가 50여개로 증설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일제침략시대보다 훨씬 확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초창기(정부수립 이후, 1948년~1970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기구

화재진압 : 사다리 소방차

예방장비 : 망루, 119전화, 차고 등

8) 1915년부터 불조심행사로 대체됨.

9) 경성소방서(1925년 개서된 최초의 소방서)의 전신으로 펌프반, 수관반, 파괴반, 사다리반으로 구성

↳ 명칭변경 : ' 25년 경성소방서 → ' 48년 중부소방서 → ' 83 종로소방서(現在)

는 다시 경찰기구에 흡수되어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소방업무의 시작은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50. 3.24. 내무부령 제10호)” 을 제정하면서였다.

사회의 발달과 함께 소방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58년 3월 11일 “소방법(법률 제485호)” 이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탄생하게 된다. 제정 당시의 소방 업무영역은 화재를 포함한 풍수해, 설해의 예방·경계·진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해까지 소방 업무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 이 제정되면서 풍수해 및 설해관련 업무가 이관된 소방법을 개정해 소방업무는 화재예방과 진압, 경계에 국한되어 범위가 축소되었다.

과도기 정부 수립 당시 50개소였던 소방서는 1950년 5월 27일에 23개 소방서만 존치하고 27개 소방서는 폐지하였으나 그 후 소방서의 수가 계속 증가되어 민방위 본부 발족 시에는 28개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며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경찰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은 소방총경이 보직되었으며, 통신기원, 재무서기, 재무서기보가 임시직 또는 고용원(후에 유급상비대원)으로 별도의 과·계 조직이 없이 근무하였다.

이 시기의 소방재정예산(국비)은 경찰예산중 일부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만 소방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규모는 많이 빈약하였다고 부족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1951년 내무부 장관 지시로 소방목적세를 부과하여 재정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소방예산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제10221호, 2010. 3. 31.자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¹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10)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1962년이 되어서야 소방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양성화되었으며, 1967년 소방서 직제가 개정되면서 시·도지사가 필요한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1969년에서야 소방서 내에 방화과와 소방과의 2개과가 설치되었다. 소방행정제도가 자치소방제도로의 기구개편은 정부조직법('70. 8. 3.)의 개편으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 기구 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1972년 5월 31일과 같은 해 6월 1일에 서울, 부산에서 각각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사무를 관장하면서 자치소방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다른 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 장관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계속 경찰기구 내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4) 발전기(국가+자치소방, 1970년~1992년)

1970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서만 자치소방이 실시되어 국가와 자치소방의 이원화된 시기이다. 서울·부산을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6.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이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외한 지역에서는 내무부 소방국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가 되어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고,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지역적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이러한 기념행사들은 1963년 내무부가 주관하는 ‘소방의 날’ 행사로 진행되어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하면서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다.

1972년 국토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고속국도의 건설, 전력의 개발등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소방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화재발생 빈도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화재양상의 다양화와 대형화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방 수요가 날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소방의 전문화, 과학화, 독립화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방행정제도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면서 1991년 소방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자치 소방제도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었던 소방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1992년 각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소방은 소방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 2절 현대의 소방제도(시·도 자치소방, 1992년 이후)

그 동안 근대화,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새로운 사고들을 추가로 경험하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재와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도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마친 후에 2004년 대한민국의 안전을 전담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이 출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고 선진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 정부 부처가 최초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소방방재청은 각종 현장 활동에서 항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119”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10.10.01), 우면산 산사태(’ 11.07.27), 불산가스 누출(’ 12.09.27) 등의 예측불능의 인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해일, 원전, 초고층 등 미래재난에 대비

한 전문 대응기관으로 확대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인적재난(1993년~2012년)>

구분 연도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1993	우암상가 APT 붕괴(충북)	76	28	48	상가 52개, APT 59세대	가스폭발 붕괴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전남)	110	66	44	비행기 1대	추락
1994	서해훼리호 침몰(전북)	362	292	70	선박 1척	복원력 상실
	성수대교 붕괴(서울)	49	32	17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부실시공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서울)	113	12	101	건물 145동, 차량 92, 물품 431건	가스 모닥불 불씨 점화
1995	대구도시가스 폭발(대구)	303	101	202	건물 34동, 차량 150대	도시가스관 파손
	삼풍백화점 붕괴(서울)	1,440	502	938	건물 1동, 차량 310대	부실시공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경기)	53	40	13	건물 1동	방화
1996	강원도 고성 산불(강원)	-	-	-	산림 3,762ha, 건물 227동 등	폐기 TNT 파편
	태백 탄광 매몰(강원)	15	15	-	갱도 40m 붕괴	침투수에 의한 붕괴
1997	부천 LPG가스 폭발(경기)	14	3	11	주택파손 16동	부부싸움에 의한 LPG가스 폭발
	남원철도 건물목충돌(전북)	32	16	16	버스 1대	버스 신호무시 열차 충돌
1998	청봉 상수도가압장 붕괴(경기)	11	5	6	건축물 및 기둥 18개소 파손	부실 공사
	부산콜드프라자 화재(부산)	43	27	16	신축냉동창고 (지하 2, 지상 8)	전기합선 발화 추정
1999	씨랜드화재(경기)	28	23	5	건물 1동	모기향불에 의한 화재 추정
	호프집화재사고(인천)	137	57	80	건물 1동(지하 1, 지상 4)	종업원 실화
2000	동해안 산불(강원)	17	2	15	산림 23,183ha 등	군소각장 불씨
	여천공단폭발화재사고(전남)	25	6	19	건물 4동, 차량 20대	냉동기 고장 고온 폭발 추정
	안산공장폭발화재사고(경기)	53	6	47	2층 철골조 3동	위험물 혼합과정 탱크폭발 화재추정
2001	홍제동 주택화재 및 붕괴(서울)	9	6	3	주택 264m ²	화재진화 및 인명 검색 중 붕괴
	천안시 여관화재사고(충남)	16	6	10	객실 32개(1,254m ²)	기계실 발화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전마)	38	3	35	건물 1층 바닥	지하실 누출 가스에 의한 폭발

2002	군산 대가주점화재(전북)	15	15	-	1,765만원	1층 전기히터 과열 착화
	김해에어차이나 추락사고(경남)	166	129 (실종 6)	37	중국민항기 보잉 767 1대	시계 불안정 선회 중 추락
2003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구)	340	192	148	615억원	방화
	열차추돌사고(대구)	97	2	95	기관차 1량, 객차 2량	신호대기 중 추돌
2004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경기)	6	-	6	3층건물	건물노후 붕괴
2005	상주시민운동장 안전사고(경북)	172	11	161	-	공연관람객 군중압사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경기)	14	9	5	-	시공순서 무시 무리한 시공추진
2006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재(제주)	21	1	20	빌라 79㎡ 전소 건물 3동, 차량 16대	LPG 고의누출 원인미상 폭발
	서해대교 교통사고	68	11	57	25t 차량 등 30여대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2007	동부제강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충남)	8	5	3	50백만원	거푸집 붕괴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	-	-	어장 29,454ha, 해안 70km 오염	선박 충돌
2008	이천냉동창고 화재(경기)	50	40	10	715천만원	공사 중 가연성 증기 점화폭발
	서울 송례문 화재	-	-	-	문루 1층 10% 2층 90% 손실 등	토지보상 불만 계획적 방화
	이천물류창고 화재	13	7	6	53,100천원	용접 부주의
2009	창녕화왕산 역새폴테우기(경남)	88	7	81	90,000천원	역새테우기 행사 돌풍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	11	3	8	공사장 붕괴 등	지반약화 추정 붕괴
	의정부 경전철공사현장 붕괴	13	5	8	크레인붕괴 등	안전부주의
2010	인천대교 버스교통 사고	24	13	11	버스, 가드레일 파손 등	고장차량 피양 다리 난간 추락
	인덕 노인요양센터 화재	26	10	16	4,500천원	배전반 스파크 추정
2011	오봉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장 붕괴(강원)	9	4	5	-	배수로공사 중 거푸집 붕괴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천공기 전복(서울)	5	1	4	지역 11,221가구 정전	작업 중 천공기 전도
2012	구미시 불산누출사고(경북)	5	5	-	농산물 162ha 과수목 15,930주 등	안전사고

* 자료 : 2013년 소방방재 통계연보(소방방재청)

또한 최근의 재난환경은 재난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보다 운수사고, 자살, 익사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와 손상은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손실 초래하고 재난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위기개념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위기관리 개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소방에서는 비일상적 위기와 재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현상과 밀접한 안전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상시 재난관리로, 재난 시 행정관서에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요구하던 방식에서 지역 안전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로, 재난 발생 후 눈에 보이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까지 예측, 제거하는 적극적 재난관리로, 재난 유형별로 분산 관리되던 독립·분산형 재난관리에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변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1) 소방인사 및 교육훈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49~ '69)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69~ '82)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거쳐 현재 소방공무원법 특례규정('83 ~ 현재)에 의거 특정직공무원으로 신분이 변천되어 왔다. 소방행정제도개편은 소방법과 소방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91.12.14.)되면서 각 시도의 소방업무수행책임이 각 시도지사로 전환, 시군의 지방소방공무원임용권이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되어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는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로 11개의 계급체계와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채용방법은 크게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신체검사, 4차 면접시험을 통하여 매년 모집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전국 18 소방본부, 9 소방학교, 197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39,519명(국가직 322명, 지방직 39,197명)이 일근, 2교대, 3교대의 형태로 근무 중에 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많은 수의 소방공무원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한 2013년말 총인구수 51,141,463명 대비 소방공무원 1명당 담당인구수는 1,294명으로 일본의 799명, 미국의 912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부족은 119 출동 지연 등의 문제로 소방서비스 품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에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시·도의 예산 배분에 따라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 채용방법>

내용 채용방법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력
			1차 시험과목	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공개 채용	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소방관계법규, 수학 중 2과목		제한 없음
	소방령	25세 이상 40세 이하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특별 채용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해당없음	한국사, 국어, 소방학개론	해당없음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해당없음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선택	
	소방령	20세 이상 45세 이하	해당없음			
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해당없음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형법,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제한 없음

* 자료 : 고성소방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의 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은 소방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전문능력 배양과 대규모 복합재난 등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국의 소방학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경찰교육기관(경찰전문학교)에서 전담하여 맡아오다 1963년 4월 경찰전문학교내에 소방학과를 설치하였다. 1972년 7월 22일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동년 7월 31일 경찰대학 부설소방학교를 설치하였다. 이후 경찰대학 부설소방학교는 민방위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업무를 인수하면서 폐지되었으나 당시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 하였다.

최초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1978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소방학교 직제가 공포

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78. 9. 4., 경기도 수원시)가 개교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소방학교¹¹⁾(' 83. 7.18.), 부산광역시 소방학교¹²⁾(' 87. 1. 9.), 충청도 소방학교(' 93. 7.20.),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96. 3.29.), 경기도 소방학교(' 97. 6. 2.), 강원도 소방학교(' 10. 4. 2.), 경북 소방학교(' 94. 9.11.), 경남소방훈련장(' 01.05.17)이 차례로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1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2년 광역자치소방제도가 정착되어 경상남도는 “살기 좋은 편안한 경남” 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를 설치(1 소방본부, 13 소방서)하였으며, 고품질의 전문구조·구급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민 응급의료 서비스 기반 등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현재는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의 3과, 119종합상황실 1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경남소방본부 상징>

심별마크	상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을 막아준다고 믿는 경북궁에 세워졌던 ‘해태’ 를 방패모양으로 형상한 것으로, 재난으로부터 경남을 보호하여 세계일류 경남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위쪽모양 : ‘해태’ 의 머리와 소방관의 방수모자 ○ 아래쪽 : ‘해태’ 가 앉아있는 정면 모습과 방패모양 형상화 ○ 색상 : 경남도기의 다섯 가지 색상, 위쪽 주황색은 안전과 119의 의미

* 자료 : 경상남도소방본부

1-1) 의용소방대

소방방재청 등 전문적인 소방조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므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의 경우에만 출동하는 의용소방대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은 1915년 8월 도지사가 소방업무와 수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출발한다. 소방조는 조두(組頭) 1인과 소두·소방수로 조직하되 필요한 경우 부조두를 두게 하고, 조두·부

11) 서울소방교육대(' 83. 7.18.) → 서울소방학교(' 86. 9.22.)

12) 부산소방교육대(' 87. 1. 9.) → 부산소방학교(' 06. 9.11.)

조두·소두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이 임명하게 한 것이다.

1935년 5월에는 수방단(水防團)이 조직되어 소방조의 업무에서 수방업무는 제외되었고, 1939년 7월에는 소방·수방·방공업무를 하는 경방단이 설치되고 소방조와 소방단은 폐지되었다.

1958년 3월에 제정된 소방법에서는 서울특별시·시·읍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수방 업무를 보조토록 하였다. 면의 경우에도 인구가 밀집한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1966년 4월에는 수방업무가 의용소방대의 업무에서 제외되었으며, 1973년 2월 소방법의 개정으로 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그 재원으로 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의 보조 외에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이 면제되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명칭·위치·정원·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편제를 살펴보면, 의용소방대에 대장 1인과 부대장 1인, 부장(남성 3부, 여성 2부)·반장과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장과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하고 부장 이하 간부 및 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37조 및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 시·읍·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총 3,631개대 95,025명(전국 통계임)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1-2) 의무소방원

2001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된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의무소방대¹³⁾ 및 의무소방원은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

13) 의무소방대 :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전환 복무된 자 중에서 선발(정원 2,000명)

당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인원 부족을 해소하고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현행 의무소방원은 2006년 9월 22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과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의해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

의무소방원은 병역 미필의 민간인의 지원에 한하여 선발되며 병역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광역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보통 각 시도 소방본부의 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을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임용하게 된다.

의무소방원의 선발은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의무소방 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발시험에 통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4주 간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교육대에서 소방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 행정 업무)을 받고 선발된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인계된다. 그 후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나 시도 본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2) 방호·예방업무

소방관련 법령은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13개 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8개 규칙,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199개의 훈령, 예규,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최근 소방관서의 조직구조는 재난관리 프로세스 기반으로 기능을 부분화하여 업무수행 기능향상을 위해 화재의 사후수습에서 사전예방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소방업무는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방호업무와 예방업무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방호업무란 의용소방대, 소방용수시설, 소방응원협정, 소방대응 유·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화재진압 및 소방안전대책, 현장활동 기본지침 등을 수립하고, 소방훈련, 경방활동, 화재피해복구 안내 등을 통하여 재난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예방업무란 특정소방대상물¹⁴⁾별 화재예방전반에 관한 소방특별조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격자를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소방안전관리제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동의, 지정수량이상인 위험물제조소 등(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및 장소)에 설치허가와 안전관리를 선임,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로 사고예방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구조·구급업무

구급업무의 시작은 1970년대 미(美) 잉여 앰블린스를 인수받아 화재현장 응급환자 이송을 시작으로 1981년부터는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대전 등 6개 소방관서에서 야간통행금지시간대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자 1982년에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규정(내무부 훈령 제 716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 447호)을 마련하여 1982. 3. 2 서울에 119구급대를 창설하고 동년 7월 6일에 인천에서도 2개 소방관서에 구급신고 센터를 설치,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12명으로 119구급대를 편성 운영하여 24개 소방관서로 확대하였다. 이후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 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구급업무를 소방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2013년 말 기준 119구급대는 1,280개대 7,883명(고속도로구급대 10개대)이 구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조업무는 1987년 이전에는 각 소방서의 파출소에서 화재진압 시 발생하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요원 중에서 인명구조반을 편성·운영하여 오다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7개시 9개대로 시작하여 1989년 12월 30일과 1999년 2월 5일에는 소방법 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신

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복합건축물 등의 30개로 분류

설하여 구조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함으로써 종전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등과 함께 구조·구급업무를 소방의 목적에 명문화하였다. 이후 중앙119구조대(6팀 68명)가 발대되었고 2013년 현재 119구조대¹⁵⁾는 240개대 3,690명이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구급분야의 전문기술과 첨단 구조구급장비 및 화재진압 장비를 갖춘 15개대 소방항공대(헬기 27대 270명)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선박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자국민 보호와 해외의 대형재난 등이 발생 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해 119국제구조대¹⁶⁾가 비상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1차 캄보디아 프놈펜 여객기 추락('97. 9. 4.)과건을 시작으로 1999년 터키, 대만의 지진, 2004년 태국의 지진해일, 2008년 중국, 미얀마의 태풍피해, 2009년 인도네시아의 지진, 2010년 아이티의 지진, 2011년 일본의 지진(해일),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지역('13.11.15.)까지 총 12차례 과건하여 피해지역의 구조, 방역, 시체발굴 등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소방을 널리 알리고 있다.

4) 긴급구조 통제단 업무

1995년 이전에는 자연재해 위주의 풍수해대책법 체제에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1991년 재난관리 및 방재기능이 이관되었다. 이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 등을 계기로 인적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적재난을 관장하는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의 개청을 계기로 재난관리법의 전부와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를 안전관리기구(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방 및 대비(재난관리책임기관 예방조치, 평가, 점검, 교육 등), 응급대책(재난사태 선포, 예·경보 발령, 동원명령 등), 긴급구조(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현장 지휘 등), 재난복구(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합동조사 등), 안전관리계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관리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된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15) 일반구조대 : 205개대 3,690명

특수구조대 : 26개대 280명(수난 9, 산악 7, 화학 10)

직할구조대 : 9개대 289명(중앙·서울·부산·대구·인천·강원·경북 각 1, 경기 2)

16) 119국제구조대 : Korea 119 Search and Rescue Team (약칭 KOSAR)

- 조직 : 6개반 41명- 장비 : 인명탐색 및 첨단구조장비 등 42종 142점

이에 긴급구조통제단의 업무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재난발생시 대응 및 긴급복구활동 조직이 신속, 효과적인 대응과 긴급복구활동 수행을 위해 계획가동 권한과 책임, 자원동원 체계, 현장지휘체계, 표준작전절차 등을 정해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의해 기능별로 통제단을 조정·협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구조통제단 조직의 효과적인 임무수행과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긴급구조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으로 나누어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으로 조직되어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 1회 실시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상의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반별 임무 숙달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인력, 자원을 동원하는 현장대응 종합기동 시범훈련을 통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만 543회에 5,062개의 기관(단체)이 참여하여 긴급구조훈련(동원인원 176,414명, 동원장비 15,632점)을 실시하였다.

제 3절 고성군의 소방행정

1) 소방조직과 편성

고성군은 면적 517.28km²으로 1개읍 13개면에 인구 56,369명(가구수 25,718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는 조선산업단지(동해면 일원 내산, 양촌, 용정, 장좌지구)에 대형조선소 5개소(SPP조선, 천해지, 삼강엠엔티, STX고성조선해양, EK중공업)와 4개의 농공단지(울대, 세송, 회화, 마동)를 비롯하여 읍·면지역의 특성인 재래시장 4개소(공룡, 고성, 영오, 배둔)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소방조직¹⁷⁾인 고성소방서(2과 5담당), 1구조대, 2안전센터, 소방공무원 82명으로 구성되어 화재 구조·구급 등 사고발생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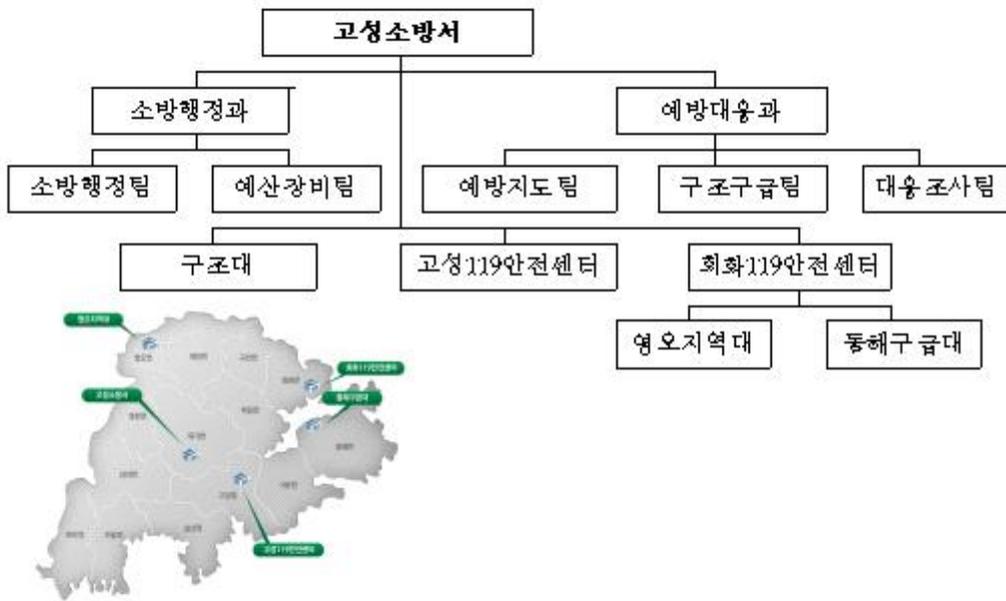
고성의 소방조직은 1958년 고성경찰서 경방단에서 소방사무 담당하였고, 1975년부터는 고성군 민방위과 고성읍소방대에서 소방사무를 담당하다가, 1989년 고성·회화파출소가 충

17) 고성군 소방관 1인당 담당비율 : 면적 6.39km², 인구 687명, 가구 314세대

* 역대(歷代) 소방서장 : 초대 이귀효, 2대 최기두, 3대 이재순(現在) 역임(歷任)

무소방서 관할로 조직편성 운영되어 왔다. 2006년 명칭을 고성119안전센터·회화119안전센터로 각각 변경하고 현재는 2009년 6월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고성소방서가 개칭되어 운용 중에 있다.

<고성소방서 조직 및 소방공무원 현황>



구분	계급		지방 소방정	지방 소방령	지방 소방경	지방 소방위	지방 소방장	지방 소방교	지방 소방사
	계	수							
정원	82		1	2	6	6	15	23	29
현원	82		1	2	6	17	20	13	23

* 자료 : 고성소방서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고성군지역 1읍 13개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 남성과 여성의용소방대 각각 14개대, 수난전문의를용소방대 1개대 총 29개대 689명(남성 397명, 여성 292명)으로 조직되어 고성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현장활동의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현황(2013년 기준)>

대별 구분	계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	수난
계	689	92	37	46	50	39	31	36	45	40	48	49	45	53	50	28
남성	397	55	17	27	28	19	12	20	28	21	30	29	22	31	30	28
여성	292	37	20	19	22	20	19	16	17	19	18	20	23	22	20	-

* 자료 : 고성소방서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정체제에서는 “소방”이 생활 안전사고대응을 위한 유일한 대응기관으로서, 또한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화재, 구조·구급활동 및 생활민원까지 항상 국민의 곁에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소방장비 첨단 IT를 활용한 기술집약적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비를 지역제반 환경 및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장비를 도입하여 소방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성지역에는 소방차량 13종 24대, 소방활동장비 일반구조장비 외 213종 969점, 소방용수시설은 관내 214개소(법정 139, 비법정 85)을 활용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 임하고 있다.

<고성소방서 소방장비 등 주요장비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구난차	구급차	굴절차	화물차	지휘조사	순찰차	기타 행정차
24	5	2	1	1	5	1	1	2	3	3

구분 계	공기 호흡기	공기 충전기	동력 펌프	에어 매트	동력 절단기	유압콤 비세트	방열복	모터 보트	로프	기타
969	106	3	3	3	5	6	11	1	14	817

<고성소방서 소방용수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계(농촌형)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소계 (농촌형)	지상식 (농촌형)	지하식 (농촌형)		
214(85)	206(85)	203(85)	3(0)	8	-

* 자료 : 고성소방서

2)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대상물로는 소방시설¹⁸⁾, 소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용품을 일컫는다. 이 중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현재 고성소방서에서는 고성지역의 공동주택 등 3,339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¹⁹⁾이 소방시설에 대해 설치·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고 있다.

<고성군 특정소방대상물 현황(2013년 기준)>

대상물 구분	계	근린 생활	위락	관람 집회	판매	숙박	노유자	아파트 기숙사	업무	교육 연구	공장	기타
계	3,339	1,923	79	19	5	91	66	64	116	68	204	704
1급	4	-	-	-	-	-	-	-	-	-	4	-
2급	329	65	-	6	3	54	20	36	8	1	90	46
일반 및 공공	3,006	1,858	79	13	2	37	46	28	108	67	110	658

※ 대형화재취약대상²⁰⁾ : 8개소

<고성군 위험물 저장·취급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계	제 조 소	취급소				저장소					
			주유	일반취급소			옥외	옥내	이동 탱크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탱크
				충전	소비등	옮겨담음						
계	314	-	49	26	5	8	13	26	80	48	37	22

* 자료 : 고성소방서

18) 가. 소화설비 :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자동소화장치,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나.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등

다. 피난설비 : 피난기구(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등), 인명구조기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라.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등

마.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19)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소방기본법」 제2조3항).

20) 대형화재취약대상 :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
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
물.

3) 화재발생 현황

고성소방서에서는 1일평균 12건(화재 0.3건, 구조 3.2건, 구급 7.3건, 생활서비스 1건)의 출동을 하였다. 화재발생은 총 105건으로 원인별로는 부주의 65건(68.25%), 전기적 요인 18건(18.9%), 원인미상 17건(17.85%), 기계적 요인 2건(2.1%), 방화의심 2건(2.1%), 가스누출 1건(1.05%) 순이며 최근 고성지역의 화재발생은 겨울철 이상기온에 의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임야화재와 논·밭두렁, 농작물 부산물 소각에 따른 실화로 인한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고성소방서 화재발생 현황(2013년 기준)>

연도	구분 건수 (건)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비고
		계	사망	부상		
2009	159	8	1	7	490,658	
2010	119	6	1	5	640,850	
2011	107	-	-	-	988,390	
2012	102	3	-	3	777,582	
2013	105	4	-	4	515,184	

시간대별 화재발생 현황														
연도별	시간별	건수	23 ~01	01 ~03	03 ~05	05 ~07	07 ~09	09 ~11	11 ~13	13 ~15	15 ~17	17 ~19	19 ~21	21 ~23
2009년도		159	4	5	4	5	10	18	27	26	24	21	12	3
2010년도		119	4	5	4	6	11	13	18	14	18	14	8	4
2011년도		107	9	7	5	3	8	14	13	17	13	10	8	0
2012년도		102	6	3	7	6	3	9	11	10	15	12	8	12
2013년도		105	6	4	6	3	4	11	18	17	15	5	14	2
총 건수		592	29	24	26	23	36	65	87	84	85	62	50	21
비율(%)		100	4.9	4.1	4.4	3.9	6.1	11.0	14.7	14.2	14.4	10.5	8.4	3.5

연도	구분	계	발화 원인별					계	발화 장소별						
			전기 기계	가스 화학	교통 사고	부주 의	방화		미상	주거	비주 거	차량 등	위험 물	임야	기타
계		105	20	1	0	65	2	17	105	32	25	10	0	17	21
고성읍		38	11	1		21	1	4	38	11	13	2	0	4	8
삼산면		3				3			3		1			2	
하일면		6	1			4		1	6	2				2	2
하이면		9				7		2	9	4	1			1	3
상리면		10	1			8		1	10	3	1	1		5	
대가면		5	2			2		1	5	2	2			1	
영현면		2				1		1	2	1		1			
영오면		4				3		1	4	2	1	1			
개천면		2	2						2	1	1				
구만면		1				1			1			1			
회화면		5				3	1	1	5	1		2		1	1
마암면		6	1			2		3	6	2	1	1			2
동해면		6				6			6	1	1			1	3
거류면		8	2			4		2	8	2	3	1			2

* 자료 : 고성소방서

4) 구조·구급 현황

구조출동건수는 1,161건으로 205명을 구조하였고, 구조 장소별로는 주택 125건(30%), 도로 86건(21%), 산 30건(7.4%), 발생시간대로는 15~16시 78건(8.2%), 10~11시, 14~15시 77건(8.1%), 발생요일별로는 화요일 163건(17.1%), 수요일 145건(15.2%), 일요일 138건(14.5%)등으로 나타났으며,

구급출동건수는 2,683건 출동하여 2,112명의 응급환자 등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환자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주택) 1,076건(50%), 도로 469건(22%), 공공장소 80건(3.7%), 환자 증상별로는 두통 254건, 전신쇠약 228건, 오심구토 161건, 환자 평가별로는 의식명료 환자 1912건, 혼미환자 72건, 무의식환자 5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성소방서 구조활동 현황(2013년 기준)>

연도 \ 구분	출동건수	구조인원	교통사고	일반사고	수난	기계	산악	기타
2009	615	141	71	12	2	5	13	38
2010	745	99	37	18	-	3	9	32
2011	900	187	65	103	3	7	4	5
2012	1,227	181	114	41	6	9	5	6
2013	1,161	205	151	33	4	1	12	4

<고성소방서 구급활동 현황(2013년 기준)>

연도 \ 구분	출동건수	이송인원	교통사고	일반사고	만성질환	급성질환	임산부	기타
2009	2,515	1,756	349	311	395	431	7	263
2010	2,754	2,132	472	414	458	499	5	284
2011	2,676	2,077	364	448	281	358	6	620
2012	2,816	2,144	365	592	327	517	3	340
2013	2,683	2,112	370	553	850	300	2	37

* 자료 : 고성소방서

5)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고성소방서 전 직원은 항상 최악의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재난에 대응하여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2009년 개청 이후 소방행정의 기초를 열심히 다져 지역 지킴이의 역할 수행을 위해 고성군에 맞는 소방안전예방프로그램으로 매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소방안전체험장 운영, 다중이용장소 등 소방관계자 화재예방교육, 소방차 길터주기 등 소방홍보 캠페인, 소외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민관합동 등 대상별 소방훈련,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보급, 비닐하우스 농가 화재안전이름표 달기,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현장밀착형 소방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항상 고객(국민)중심, 수요자의 시각으로 말은 바 직무에 대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및 1종대형 운전

면허, 소방관련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행사 및 장학생을 선정하여 어려운 여건의 어르신과 학생과 지역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여 119와 군민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가고 있다.

<고성소방서 주요실적(2013년말 기준)>

연도	구분	주요내용	수상내용	비고
2010		전국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	우수	
		경상남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	최우수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활동평가 회화여성의용소방대	최우수	
2011		경상남도 소방행정평가	우수	
		경상남도 소방장비관리 실태 점검	우수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평가	우수	
2012		경상남도 소방행정 종합평가	대상	관서
		경상남도 초고층 화재진압 작전전술 발표대회	1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운영 실적	우수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평가	장려	
		경상남도 화재진압 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	최우수	
2013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최우수	
		경상남도 소방행정종합 평가	장려	
		경상남도 소방장비점검 대회	장려	
		경상남도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연구과제 발표대회	장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3위	

* 자료 : 고성소방서

고성소방서는 안전 없이는 군민행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군민중심·현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현장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제, 계절·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안전서비스 제공,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천·성과위주의 고성소방서를 실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참고자료 : 1. 2013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소방방재청)
2. 2013년 소방방재 통계연보(소방방재청)

제 5장 고성군의 사회단체

제 1절 개요

사회단체는 비정부 조직이면서 지역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지역사회 조직으로서 같은 목적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직한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기초적인 인간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고 신분, 직업, 직종, 이념과 같은 이차적인 관계 형성의 요인등으로 인해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요구와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익성을 추구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고성군내에는 우리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 성격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유형을 국민운동, 사회봉사, 환경운동, 농어민, 지역사회개발, 교육지원, 노인·여성, 보훈및 참전, 장애인복지단체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활동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 2절 사회 단체별 활동 상황

1) 국민운동 단체

○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의 이름으로 새마을운동이 제창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을 새마을 기본정신으로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국민정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창립되었으며, 동년 12월 13일자 법률 제3269호로 공포, 시행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 그 동안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게 되었다.

1984년 3월 1일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가 설립되고, 산하조직으로 새마을지도자 고성군

협의회와 고성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가 조직되었다.

2013년말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각각 14개 읍면협의회에 277명이, 새마을문고지부는 10개 읍면분회에 178명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총 732명이 활동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는 산하 3개 조직을 통해 국토청결운동, 군민체육대회 행사시 식당운영봉사, 경로식당봉사, 치매요양원 목욕봉사, 가정의 달 효편지쓰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한가위 쌀 한줌 나누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피서지 문고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운영, 독거노인 목욕봉사, 헌옷,고철 등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1982년도에 설립되어 활동하던 사회정화위원회가 1989년 4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 1991년 12월 30일 법률제4465호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는 14개 읍면 조직을 통해 총8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목적과 이념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통해 선진 한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이루며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모범가정 선발과 시상, 도덕성 회복운동, 국토대청결운동과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 범질서 확립 캠페인, 모범선행 학생선발 표창,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구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가 1982년 8월 1일 설립되었고, 전체 회원은 55명이다. 활동은 전쟁기념관과 안보현장 견학, 민족통일 전국대회와 경남도대회 참가, 국토청결운동과 환경가꾸기 참여, 군민축제 행사시 무료차집운영, 북한 이탈주민 돕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 자유총연맹 경상남도 고성군지부

한국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2월 10일 창립되었고, 고성군지부는 동년 4월 14일 결성되었다.

총2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전개, 전국한마음대회 참가, 하이먼 상족암 환경캠페인, 사랑의 집고쳐주기, 선진도민교육과 안보현장탐방, 관내 초등학교

성범죄 예방캠페인, 사랑의 떡국 나누기행사등을 전개하고 있다.

○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1961년 2월 마을문고 보급회로 출발하여 1962년 마을문고 진흥회, 1968년 마을문고 본부로 개칭된 후 1980년 12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면서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되고, 새마을운동 체제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산하조직으로 10개 읍면 문고분회가 있고 총17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하이면 상족암에서 하계 피서지문고를 운영하면서 상족암 주변 자연정화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알뜰도서관 무료교환시장 운영,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 고성군 예선대회 개최, 문고지도자 워커숍에 참석하는등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 사회 봉사 단체

○ 해병대 고성군연합 전우회

해병대 고성군연합 전우회는 그동안 읍면 단위로 전우회가 설립되어 그 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더욱 보람있고 뜻있는 봉사활동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7일 해병대 고성군연합회를 설립하고 그 설립목적은 우범지역 방범활동과 거리질서확립으로 정하고 우범지역의 방범활동, 학교주변 순찰과 군내 각종체육, 문화 행사시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안지역 자연보호행사 등을 100여명의 회원이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분야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사단법인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고성군 모범운전자회는 1969년 12월 3일 설립하면서 그 설립 목적을 교통안전 질서 계도 및 홍보, 기초질서 확립계도 활동, 군내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정하고 40여년동안 회원 자신들의 바쁜 일과를 미루고 매주 화요일 아침 학생 등굣길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야간활동, 군내 각종 체육·문화 행사시 교통정리,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음주운전자 단속시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본인의 희망과 무사고 운전 2년 이상의 영업용 운전자로서 경찰서 교통관련부서의 인성검정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현재 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 환경운동 단체

○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

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1978년 10월 5일 선포한 자연보호 헌장의 앞 구절이다.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대 명제의 실천을 위해 1977년 자연보호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79년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협의회로 개칭된 후 1998년 내무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으로 개칭되었다.

자연보호 고성군협의회는 1981년 10월 1일 설립되고, 14개 읍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활동은 자연보호 계도 홍보, 14번 국도 주변의 청결과 정화활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 FDA선정 바다(자란만) 대청결 정화활동, 외래동식물 퇴치 작업등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고성녹색환경연구소

고성녹색환경연구소는 2007년 2월 12일 설립되었으나 실제 활동은 2004년 마동 담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외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 탈진 설비 설치 촉구를 위한 고성군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다.

연구소 설립이후 회화면 봉동리 소재, 고성노벨컨트리클럽 건설현장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위시하여 동해면의 고성조선특구조성 주민설명회에서도 환경파괴와 어민피해등의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고성군의 주요사업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분쟁에 대해 교두보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군내 산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 실태조사와 감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거나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132명의 회원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회원 연수와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4) 농어민 단체

○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 고성군연합회

1983년 고성군 어민후계자 8명이 결성하였으며 1999년 고성군 어업인후계자로 명칭 변경한 후 2002년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로 등록하였다.

어업기술의 과학화와 유통의 선진화, 어민의 권리 신장을 통한 복지 어촌건설에 역점을 두고 바다살리기 정화사업, 한국수산인 경영대회와 선진지 견학,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 등을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1981년 농업인 6명이 모여 새 농장주회를 구성한 후 농민 권익 보호와 복지 농촌 건설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농업인의 참여 속에 14개 읍면 농업경영인회를 구성한 후 1997년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로 등록하였다.

농업생산 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농민의 권익 신장을 통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목표로 농업인가족 한마당큰잔치, 도 및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여, 선진지 견학과 해외농업 비교 시찰, 농업인 관련 교육실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691명의 회원과 더불어 매진하고 있다.

○ (사)한국여성 농업인 고성군연합회

2002년 3월 6일 단체 등록과 동시에 14개 전읍면에 여성농업인회를 구성하였다.

농업인 후계자 부인과 여성 후계자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여성농업인 130여명은 스스로의 지식함양을 위한 자체교육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와 경상남도 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고성군 농민회

“농민 대중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발적인 농민의 참여 속에 전체 농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생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생산과 판매와 행동을 통하여 농민의 단결과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1990년 4월 24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창립선언문의 일부로서 농민회의 설립목적은 함축성 있게 나타난 말이다.

고성군 농민회는 1970년대 카톨릭농민회를 통해 농민운동을 일찍부터 실천한 단체로 국내의 크고 작은 전국 농민대회에 참여하여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1990년 4월 6일 고성군 농민회의 명칭으로 정식 설립한 후 1990년 11월 12일 우루과이 협상 저지및 쌀값 보장을 위한 고성군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1998년 4월 6일에는 고성군 농민회 창립8주년 기념식과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01년 7월 17일 남북 통일 농민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0년도 이후에는 우리농업 지키기 농촌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입법을 위한 활동, 한미, 한중 FTA협상에 따른 활동, 농민학교 운영, 타시군 농민회와의 교류활동 강화, 경남농민 한마당잔치 등에 150명의 회원이 일치 단결하여 참여하고 있다.

○ 고성군 여성농민회

고성군 여성농민회는 고성군 농민회와 거의 비슷한 여건 속에서 출발하고 활동하였다.

1999년 9월 설립절차를 거친 여성농민회는 자주적 여성 농민 조직을 건설하여 여성농민의 전국적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농민의 인

간다운 삶을 이룩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조국통일 실현을 그 목적으로 정하였다.

우리쌀 지키기 93 전국여성농민대회, 쌀자급과 여성농민 복지실현을 위한 96 전국여성농민대회, 2004년 8월 26일 우리쌀 지키기 여성농민 대회 등 국내외 많은 여성농민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0년도 이후에는 여성농민학교 개설, 주민건강 강좌, 여성농민 정책토론회, 한방진료 봉사활동, 경남도와 전국 여성농민대회 등에 40명의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사)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

쌀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쌀농업의 보호와 발전,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쌀전업농의 육성, 생산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선진 농어촌건설과 농촌환경 보전등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3월 22일 설립된 단체이다.

산하조직으로 14개 읍면 지회가 구성되고 전체 회원 57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쌀전업농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 쌀 대축제 및 으뜸쌀 선발대회와 쌀 사랑대회 및 쌀 전업농 전국대회, 경상남도 대회에 참가하여 고성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5) 지역사회 개발 단체

○ 희망 고성 포럼

희망 고성 포럼은 “질서를 지키고 예의 바른 생활은 우리 행복의 디딤돌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성군의 현안을 포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보다 밝고 나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뜻있는 인사 60여명이 모여 2010년 9월 10일 설립한 단체이다.

2010년 10월 1일 제1회 포럼행사에 4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고성군 교육 발전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2011년 4월 8일 제2회 포럼행사는 “우리 고성 농촌에서도 잘 살수 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후 농민 4명이 성공사례 발표를 곁들였다. 2012년 5월에는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3년 10월에는 월남전 참전을 통해 본 우리의 안보문제 토론과 안보 강연도 병행하였다.

희망 고성 포럼은 깨어 있는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우리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150명의 회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고성군 의정 동우회

1996년 5월에 설립된 전직 고성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2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고성군 지방행정 동우회

1983년 8월 9일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4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고성 재향 경우회

퇴직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4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고성군 교육 삼락회

1992년 7월 6일 퇴직 교육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효성 수목장 실천회

효성 수목장 실천회는 불법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고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탈피한 장사 문화 인식변화를 위한 주민계도 단체로서 2008년 3월 26일 “숲의 친구들”이란 명칭으로 회원 19명이 모여 설립하였다가 그후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희망하여 2010년 5월 19일 회원 101명으로 구성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장묘문화 선진화 지역의 현지방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홍보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전망등의 군민 홍보를 위해 현재 104명의 회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6) 교육지원단체

○ 새교육 공동체 고성주민 모임

새교육 공동체 고성주민 모임은 1998년 11월 13일 새교육 공동체의 설립 의의를 지지하는 고성지역의 8개 기관, 16개 단체, 그리고 각급 학교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 창립하였다.

새교육 공동체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변화 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교육 풍토와, 의식을 개혁하고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체로서, 성인회원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소년회원 등 4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산하 조직인 학생 단체는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연합 학생동아리

인 고통이청소년봉사단이 2004년 1월에 결성되었고, 애육원, 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와 학습도우미 활동을 하는 어울림봉사단을 2011년 1월에 구성하였다.

새교육 공동체 고성주민 모임의 주요활동은 청소년 지방자치교실, 청소년 별자리 체험교실, 통일체험활동, 문화환경 체험교실, 청소년 봉사단 동아리 운영, 청소년 환경 소년단 운영과 아울러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의 지원 활동을 매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봉사하기 위해 시간을 내세요.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시간을 내세요. 그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세요 시간을 내세요.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내세요. 그것은 봉사의 시작입니다..... 회원 수칙중에서-

7) 노인·여성단체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대한노인회는 1969년 1월 15일 전국 경노당을 중심으로 창립하여 동년 4월 15일 사단법인체로 전환하였으며 1970년 4월 19일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성군지회 하부 조직으로 14개 읍면분회와 311개 마을경노당이 있고 전체 회원은 11,393명이다. 부설기구로 고성군 노인 대학과 회화 노인 대학에서 매주 1일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존경받는 노인상,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놀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정화 활동도 겸하고 있다.

○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물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7월 1일 12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 활성화, 다문화 가족지원,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 여성단체 활성화 등에 현재 13개단체 9,68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성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한국 부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주부교실, 미용사협회, 생활개선 연합회, 여성팔각회, 철쭉회, 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 재향군인 여성회, 고성문화원봉사단등 고성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여성단체 들이다.(단체의 정식 명칭을 생략하였음)

8) 보훈및 참전자 단체

○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 경상남도 고성군지회

6.25참전 유공자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6.25정신 함양을 위해 1992년 6월 25일 설립되었다.

6.25정신 바로 알리기, 안보교육 참석, 자연보호운동, 불우회원 관리, 사랑방 운영 등에 25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고성군지회

국가 안보 강화와 전통성 확립,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1987년 8월 14일 설립되었다.

국가 안보 결의 대회와 호국탑 참배, 현충일 행사 참석 등에 61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 6.25참전 경찰국가유공자회 고성군지회

2004년 3월 26일 설립되었으며 남산 호국참전자비 주변의 정화 활동과 전적지 탐방 등에 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고성군지회외 2개 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3년 8월 7일 동시에 설립되었다.

국가유공자와 미망인, 그 유가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상이 군경회는 137명,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111명, 전몰군경 유족회는 8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월남참전 3개 단체

·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경상남도지부 고성군지회는 1988년 11월 16일 설립되었다.

안보교육, 전적지 순례, 대민봉사 등을 목표로 17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세계평화유지군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성군지회는 2004년 4월 15일 설립되었다.

안보교육과 안보현장 방문, 창설기념 행사 개최, 불우이웃돕기 등에 18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남지부 고성군지회는 2004년 9월 20일 설립되었다. 안보교육을 통한 국가 안보 의식 고취, 고엽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원, 전적지 순례와 호국시설물 관리, 국토대청결 운동 등에 17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9) 장애인 복지단체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경상남도협회 고성군지회

장애인 복지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실현코자 1988년 7월 15일 설립되었다.

주요활동은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 기능 경기대회, 생활체육대회, 합동결혼식, 여성 기능 습득 교육, 편의시설 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이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4,800여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은 2,266명이다.

○ 경남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

농아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아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 실현을 목표로 2009년 7월 29일 설립되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TV자막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영상 전화기 무료보급, 농아의 날 문화 탐방 등에 5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 (사)고성군 장애인 부모회

장애 자녀의 양육과 재활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사회인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1993년 3월에 설립되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운영,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 신나는 토요일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에 200여명의 장애인 부모가 활동하고 있다.

○ 사단법인 경남시각장애인 복지 연합회 고성지회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활성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설립되었다. 웃음치료교실 운영과 무료 한방목욕, 이·미용등 기초생활 지원, 하계 수련회와 등산 대회를 통한 체력 증진 사업 등에 12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보기:고성군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서류, 해당 단체 방문 및 전화통화)